2026년 강남지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용역 과업내용서

2026. 09.

강 남 지 사
기 계 부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2026년 강남지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용역

2. 용역목적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제3항에 의거하여 강남지사 내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후 그 결과를 보존하고자 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③항)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24.11) 강남지사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용역 수행
* (시행주체)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선임자

3. 측정기관의 자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용역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일**까지로 한다.

나.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다. 과업수행일

계약상대자는 공휴일, 토요일 및 발주기관의 휴일 등에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감독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Ⅱ. 역무내용

1. 용역범위

가. 본 용역의 범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시설물(7개소)에 한하여 석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조사 및 안정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관계법령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세부과업내용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에 따른다.

다. 석면조사 세부사항

- 예비조사 및 육안검사 실시
- 시료채취 및 석면분석 실시
- 석면조사결과서 작성 및 제출

※ 석면조사 과정

예비조사 실시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 이력확인)

↓

육안검사 실시
(해체·제거할 자재등에 대하여 각각의 균질부분으로 구분)

↓

필요시* 고형시료 채취 · 분석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

↓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 필요시 : 균질부분이 석면함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역무대상

가.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1) 측정위치

① 일원열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781 (수서동 752)

② 수서열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9길 105 (수서동 732)

(2) 측정대상

구분	열원	건축물	석면면적(㎡)	측정지점수
1	일원	열원설비동	511.20	4지점
2		관리동	1,106.28	5지점
3		창고 및 정비동	334.10	3지점
4		수처리동	241.84	3지점
5	수서	열원설비동	285.92	3지점
6		관리동(교육훈련실)	230.28	3지점
합계			**2,709.62**	**21지점**

석면자재면적(m^2)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500 이하	3
500 초과 ~ 1,000 이하	4
1,000 초과 ~ 2,000 이하	5
2,000 이상	6

* (환경부고시 제2017-259호) 대상 시설의 최소측정지점 수는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결정

(3) 주요과업

① 시료채취 및 분석 실시

②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나. 건축물 기관석면조사 시행

(1) 측정위치

① 수서열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9길 105 (수서동 732)

(2) 측정대상

구분	열원	건축물	연면적(㎡)	비 고
1	수서	폐수처리동	378.57	2개층

* 기관석면조사용역('14년) 시 전지사 연면적 500m^2 이상 건축물 대상 시행으로 해당 건축물은 미시행

(3) 주요과업

① 석면함유여부 조사

- 배관(보온재 포함) 및 펌프, 압력용기 등 내부 설비 대상

②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및 석면지도 작성 등

- 석면함유 목록 및 물량, 석면관리방안 포함

3. 발주자 제공

가. 조사대상 시설물 도면

나. 조사대상 시설물 관리이력(필요시)

다. 석면물질조사제외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필요시) - 기관석면조사에 해당

라. 조사대상 건축물의 시설 출입 협조 및 안내

4. 제출 성과품

성과품은 감독원의 검증을 거친 후 인쇄, 제출하여야 한다.(A4[칼라] 및 전자파일)

가. 석면조사용역 보고서 및 석면지도 3부.

- 조사개요, 조사방법, 채취된 석면함유 의심물질 목록, 분석결과서, 석면관리방안 등

나. 석면조사제외 확인신청을 위한 확인서(조사 제외의 경우에만 해당) 3부.

다. 석면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지자체 제출용) 3부.

라. 기타 석면조사 수행중 수집, 작성된 모든 자료

5.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의문이나 불명확한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결과 얻게 되는 모든 자료를 결과보고서 이외에 이용하거나 복사 및 누설할 수 없고,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착수서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에서 정한 서류(다음 각 호의 사항)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는 삭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석면조사기관 지정서
3) 현장대리인계
4) 용역수행계획서
 - 현장조직표 및 예정공정표
 - 인원 투입 계획표(책임 및 참여기술자 명단,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 증빙 포함)
 - 장비 투입 계획표(계측 기기의 경우 검·교정 성적 증명서 포함)
5) 사진첩
 - 착수 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6)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가입증권
7) 보안서약서(대표자, 책임 및 참여기술자 전원)
8)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출하도록 한 사항

7. 측정장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석면농도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의 정도검사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장비에 이상이 있거나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감

독자가 장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8. 측정 시 유의사항

가. 측정 개소별 측정 지점의 수는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지점 이상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환경부고시제2020-268호, 2020.12.28.)」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등 현장 출입 전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다.

9. 결과보고서

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측정위치·일자, 측정방법·장비, 측정기관명 및 자격사항 등 일반사항

(2) 측정 지점별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단위:개/㎤)

(3) 측정 지점별 특이사항에 관한 설명(측정 높이, 기류, 주변 장애물 등)

(4) 시료채취위치를 표기한 석면지도(발주자가 기존 석면지도 제공)

(5) 측정 지점별 시료채취기구가 설치된 상황의 촬영 사진

(6) 기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나. 보고서의 제출

(1) 기한 : 준공일 이내

(2) 형식 : 보고서 출력본 1부, 전자파일(PDF)

10. 준공서류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시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에서 정한 서류(다음 각 호의 사항)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는 삭제하여야 한다.

1) 준공계

2) 준공내역서 및 정산분 증빙

3) 결과보고서(부록 및 관련자료 1식 포함)

4) 보안서약서(대표자, 책임 및 참여기술자 전원)

5)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제출하도록 한 사항

11.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석면 조사 및 시료채취 시 건물사용자 등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기간 중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 현장에 출입하는 계약상대자는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진행상황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